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54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김정재 · 서명옥 · 김재섭
김기현 · 박덕흠 · 김대식
한기호 · 김성원 · 윤재옥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대규모 데이터 보유 기업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경제적 피해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국민 안전 위협, 즉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전 국민이 통신·플랫폼 등 온라인 기반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경제 피해·2차 범죄 등은 심각한 시민재해임에도, 기업의 책임 강화 장치가 미흡해 중대시

민재해의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객 개인정보 처리·보호 조치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고, 그 결과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경우 기업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안전·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중교통수단의”를 “공중교통수단 및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과정에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까지에”를 “라목까지에”로 한다.

라. 고객 개인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서, 정보주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u>공중교통수단의</u>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p> <p>가. ~ 다. (생 략)</p> <p>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 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공중교통수단 및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과정</u> <u>에서의</u>-----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4. ----- ----- -----.</p>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 시설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신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 9. (생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고객 개인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서, 정보주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마. -----라목까지에-----

5. ~ 9. (현행과 같음)